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19호)

제 안 설 명



2020. 1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3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나,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 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복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되어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민족정기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 국권을 강탈하고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최근 국내 일각에서도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포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 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친일반민족 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친일반민족행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친일반민족 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 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